

의안 번호	2526	【울산광역시 중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】 검 토 보 고 서
----------	------	--

1. 검토경과

- 제출 일자 : 2025. 12. 5.(금)
- 제출 자 : 울산광역시 중구청장
- 위원회 회부일자 : 2025. 12. 5.(금)
- 위원회 심사일자 : 2025. 12. 16.(화)

2. 제안이유

- 체육시설 및 강습프로그램 사용료를 중구지역과 타 지역 이용자와의 차별화로 중구민의 체육시설 이용률을 제고하고 사용료 감면대상 및 반환규정 정비로 체육시설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사용료 감면대상 및 감면을 관련 별표 신설, 감면대상 등 정비(안 제 8조)
 - [별표 5] 체육시설 사용료 등의 감면대상과 감면을
 - 감면대상 및 감면을 정비
 - 감면을 100% 대상 기준 명확화: 중구 대표팀 연습목적 사용 시 4주, 주16시간 이내
 - 감면을 50% 대상 추가: 장기복무 제대군인, 체육회 주최 행사
- 시설 및 강습프로그램 사용료 관리운영자 귀책사유로 6인한 반환규정 정비(안 제9조)
- 체육시설 및 강습프로그램 사용료 개정(별표 2, 별표 4)

- [별표 2] 체육시설 전용사용료: 타 지역 이용자 50% 추가
- [별표 4] 강습프로그램 사용료: 타 지역 이용자 10% 추가

○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일부 용어 정비

4. 근거법규

- 「지방자치법」 제153조 및 제156조
- 「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4조
- 「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4조의2 및 제21조의3 별표3의2
-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 기준 10. 학원·교습·레저 서비스 관련 ④체육시설업의 규정

5. 검토의견

- 본 개정조례안은 체육시설 사용료와 강습프로그램 사용료를 타 지역 이용자에게 사용료의 50%, 10%를 각각 가산하여 중구민의 이용률을 높이고, 별표5를 신설하여 사용료 감면대상 및 감면율을 명시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임
- 주요 개정내용으로는
 - 제8조 조문에 있는 사용료 감면대상 및 감면율에 대한 내용은 삭제하고, [별표 5] 를 신설하여 감면대상과 감면율을 쉽고 명확히 알아볼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
 - 시설 및 강습프로그램 사용료의 사유별 반환규정 조문 정비(징수 금액의 차이는 없음)
 - [별표 2], [별표 4] 의 체육시설 사용료 및 강습프로그램 사용료는 타 지역 이용자에게 사용료의 50%, 10%를 각각 가산하여 우리구 시설의 중구민 이용율을 제고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임

- 상위법인 「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4조의 2에 따른 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대상과 제21조의3에 따른 시설 이용료 반환기준 등을 반영하고 있으므로
- 상위법 및 관련 규정을 검토한 바, 법령에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

근거법규

「지방자치법」

제153조(사용료)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.

제156조(사용료의 징수조례 등) ① 사용료·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

「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」

제4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체육 활동에

필요한 체육시설의 적절한 설치·운영과 체육시설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적절한 지도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체육시설에 대한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상 방역 및 예방조치와 관련하여 체육시설의 종류, 이용자의 연령 등 체육시설의 특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원활하게 체육시설이 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「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

제4조의2(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)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5조 제3항 및 제6조제3항에 따라 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 또는 활동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.

1.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
2. 다음 각 목의 단체(해당 단체의 지역단체, 가맹 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를 포함한다)가 주관하는 행사

- 가. 「국민체육진흥법」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
- 나. 「국민체육진흥법」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
- 다. 삭제
- 3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
- 4. 65세 이상의 사람, 장애인 및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행사
- 5.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 수업 또는 방과 후 활동
- 6. 「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
- 7. 그 밖에 사용료 감경이 필요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행사 또는 활동

제21조의3(이용료나 교습비의 반환) 체육시설업자는 법 제22조제1항제4호 각 목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이용료나 그 시설을 이용한 교습행위의 교습비(이하 “이용료”라 한다) 반환사유 및 반환금액에 관하여 일반이용자와 약정하지 않은 때에는 별표 3의2의 이용료의 반환기준에 따라 해당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용료를 반환해야 한다. 이 경우 체육시설업자가 이용료의 반환을 지연할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따라 반환 이용료에 연 100분의 15를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를 함께 반환해야 한다.

■ 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[별표 3의2] <개정 2024. 8. 27.>

이용료의 반환기준(제21조의3 관련)

구분	반환사유 발생일	반환금액
1. 법 제22조 제1항제4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	가. 이용개시일 전	반환금액 = 이용료 - 위약금(이용료의 1/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. 이하 이 표에서 같다)
	나. 이용개시일 이후	1) 계약내용이 이용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: 반환금액 = [이용료 - (이용료 × $\frac{\text{이미 경과한기간(일수)}}{\text{계약상이용기간(일수)}})$] - 위약금

		2) 계약내용이 이용 횟수로 정해진 경우: 반환금액 = [이용료 - (이용료 × $\frac{\text{이미 이용한 횟수}}{\text{계약상 이용 횟수}}$)] - 위약금
2. 법 제22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	가. 이용개시일 전	반환금액 = 이용료 + 위약금
	나. 이용개시일 이후	1) 계약내용이 이용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: 반환금액 = [이용료 - (이용료 × $\frac{\text{이미 경과한 기간(일수)}}{\text{계약상 이용 기간(일수)}}$)] + 위약금 2) 계약내용이 이용 횟수로 정해진 경우: 반환금액 = [이용료 - (이용료 × $\frac{\text{이미 이용한 횟수}}{\text{계약상 이용 횟수}}$)] + 위약금

비고

1. "이용개시일"이란 계약내용이 이용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에는 이용 기간이 시작 되는 첫날을 말하고, 계약내용이 이용 횟수로 정해진 경우에는 이용을 시작하는 첫날을 말한다.
2. "이용료"란 일반이용자가 체육시설업자에게 계약 시 납부한 총 금액을 말하며, 계약금·입회금·가입비·부대시설 이용료 등의 금액을 모두 포함한다. 다만, 보증금은 이용료에 포함되지 않는다.

「소비자분쟁해결기준」

제1조(목적) 이 고시는 소비자기본법 제16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정함으로써 소비자와 사업자(이하 "분쟁당사자"라 한다)간에 발생한 분쟁이 원활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.

제2조(피해구제청구) 분쟁당사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분쟁당사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, 시·도지사, 한국소비자원장 또는 소비자단체에게 그 피해구제를 청구할 수 있다.

제3조(품목 및 보상기준) 이 고시에서 정하는 대상품목, 품목별분쟁해결기준, 품목별 품질보증기간 및 부품보유기간, 품목별 내용연수표는 각각 별표 1, 별표 2,

별표 III, 별표 IV와 같다.

제4조(재검토기한) 공정거래위원회는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(대통령훈령 제334호)」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(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< 체육시설업, 레저용역업 및 할인회원권업(3개 업종) >

④체육시설업, ⑤레저용역업, ⑥할인회원권업 (1-2)		
분쟁 유형	해결 기준	비고
1) 제공된 물품 또는 용역이 계약내용과 다른 경우	○ 계약해제	* 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법 시행령 제18조에 의한 회원제 체육시설업은 제외
2) 시설고장, 정원초과 등으로 당해 시설물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	○ 환급 또는 동급의 타 시설물로 이용 대체	
3) 신체상 피해 발생	○ 배상액 배상	• 회원제 골프장업, 스키장업, 요트장업, 회원제 종합체육시설업
4) 사업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- 이용개시일 이전 - 이용개시일 이후 • 계약내용이 이용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 • 계약내용이 이용 횟수로 정해진 경우	○ 반환금액 환급 • 반환금액 = 이용료 + 위약금 ○ 반환금액 환급 • 반환금액=[이용료-(이용료× 이미 경과한기간(일수) 계약상이용기간(일수))] + 위약금 • 반환금액=[이용료-(이용료× 이미이용한횟수 계약상이용횟수)]+위약금	* 이용개시일이란 계약내용이 이용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에는 이용 기간이 시작되는 첫날을 말하고, 계약내용이 이용 횟수로 정해진 경우에는 이용을 시작하는 첫날을 말함 * 이용료란 일반이용자가 사업자에게 계약 시 납부한 총 금액을 말하며, 계약금·입회금·가입비·부대시설 이용료 등의 금액을 모두 포함함. 다만, 보증금은 이용료에 포함되지 않음
5) 소비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- 이용개시일 이전 - 이용개시일 이후 • 계약내용이 이용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 • 계약내용이 이용 횟수로 정해진 경우	○ 반환금액 환급 • 반환금액=이용료-위약금 ○ 반환금액 환급 • 반환금액=[이용료-(이용료× 이미 경과한기간(일수) 계약상이용기간(일수))] - 위약금 • 반환금액=[이용료-(이용료× 이미이용한횟수 계약상이용횟수)] - 위약금	* 위약금은 이용료의 1/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함